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

제정 2022. 01. 1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4조(사업)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운영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회, 시·도검도회 및 전국규모연맹체가 주최·주관하고 승인하는 국내 전국대회 개최에 적용한다. 단,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(세계검도선수권대회 등), 종합전국대회(전국체전, 소년체전 등)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대회주체) 대회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최 :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기관(단체)을 말한다.
2. 주관 : 주최 기관(단체)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(단체)을 말한다.
3. 후원 : 대회에 필요한 재정, 시설, 물자,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(단체)을 말한다.

제4조(대회의 구분) ①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제대회
2. 전국대회

② 전국대회는 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회에서 주최하며, 개최지 시·도검도회에서 주관한다.

③ 전국규모연맹체의 경우 소관 범위 내의 대회에 한하여 주최할 수 있다.

④ 생활체육국제·전국규모대회는 본회가 주최할 수 있다.

제2장 승 인

제5조(대회 신설승인) ① 전국규모연맹체는 전국대회 신설 시 본회에 대회 승인 신청을 한다.

② 신설 대회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회 개막 3개월 전까지 본회에 ‘대회승인신청서’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대회 개최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승인 신청서(공문)
2. 개최 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

제6조(대회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회의 승인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검도 발전 차원에서 대회 빈도나 방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
2.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

제7조(보고) '대한체육회 승인대회, 대한검도회장기 대회'를 주최, 주관하여 개최한 해당 단체는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회결과보고서(별지 제3호서식)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운 영

제8조(유치신청) ①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를 유치하여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·도검도회는 본회 요청 시 문서로써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다.

② 유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유치 신청서(공문)
2. 전국대회 유치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
제9조(개최지 선정) ① 개최지 선정은 시·도의 유치신청서류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한다. 필요시 사전답사를 할 수 있다.

② 대회 유치신청 시·도의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본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회 유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.

③ 대회 유치선정 시·도가 본회와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회 개최를 반납한 경우에는 대회유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관계를 보전해야 하며 개최를 반납한 경우 차기 연도 개최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10조(상업적 권리) ①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후원(협찬)사 선정권, 방송중계권 판매, 광고 판매, 입장료 징수, 마케팅, 디지털 및 비디오 등 모든 상업적권리는 주최 기관(본회)에 있다.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, 주관, 후원은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③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회 엠블렘, 마스코트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로고, 후원 및 광고 등 마케팅 권한을 본회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받은 후 이용할 수 있으며, 대회종료 후 모든 권리는 본회로 귀속된다.

④ 유·청소년 연령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,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.

제11조(개최시기) ① 각 대회별 개최 시기 및 일정은 대회주체 간 상호협의 후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② 검도 관련 국제대회(세계검도선수권대회 등)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연도에는 전국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조직위원회) ① 대회 주관 기관(단체)은 필요에 따라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구성 시 대회장은 주최 기관(단체)장이 되며, 조직위원장은 개최지 주관 기관(단체)장이 된다.

③ 대회임원은 주최, 주관 기관(단체) 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대회종료 후 본회에 결과 및 정산보고(별지 제3호 서식) 제출 후 해산한다.

제13조(경기임원) ① 본회 주최·주관 대회의 경기임원은 심판원(임원장, 심판장, 심판배정위원장, 심판배정위원, 심판), 경기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. 단, 심판은 심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심판으로 구성한다.

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회규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임원 및 심판원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및 여비 지급) ① 본회 주최·주관 대회의 심판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별지 제4호 서식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국제대회(세계검도선수권대회 등), 종합전국대회(전국체전, 소년체전 등)는 해당 대회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대회요강 변경 승인) ① 본회가 승인한 대회의 대회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서 본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대회요강 변경 요청 시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제16조(대회공고) ① 대회 주최 기관(단체)은 주관 및 후원 기관(단체)과 상호 협의하여 대회의 일반사항, 시상, 참가자격 등을 작성하여 공고한다.

② 주최 기관(단체)은 필요할 경우 참가자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주최 기관(단체)은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참가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7조(대회참가) ① 대회에 참가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대회 공고내용에 명시된 참가 신청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참가 신청한 개인 및 단체는 본회 경기인등록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대회 주최 기관(단체)는 필요에 따라 경기인등록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 도중에 기권한 선수 및 단체는 해당 대회의 차기연도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8조(시상) ① 시상은 종목별, 부별 1위(1명·팀), 2위(1명·팀), 3위(2명·팀)에게 각각 상장, 트로피 및 메달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회 특성에 따라 시상의 내용은 달리할 수 있다.

제19조(경기기록관리) 주최 기관(단체)은 경기기록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, 주관 기관(단체)은 대회 종료 후 경기 기록지를 본회로 제출한다.

제20조(소청 및 처리) 대회에 참가한 임원, 선수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,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.

제21조(준수의 의무) ① 주관 기관(단체)는 본회의 '검도경기 심판규칙'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②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와 협의 후 별도 지시에 따

라야 한다.

제22조(후원명칭 등 사용에 관한 권리) ① 본회가 승인한 대회를 연맹체가 주최, 주관하는 경우 ‘후원’에 본회 명칭과 로고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본회가 승인한 대회를 시도검도회가 주최, 주관하는 경우 ‘후원’에 본회 명칭과 로고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본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거짓으로 사용한 경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회 ‘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(2022. 1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(대 회 명) 개최 계획서

1. 대회 개요
  가. 대 회 명 :
  나. 대회목적 :
  다. 대회기간 :
  라. 대회장소 :
  마. 세부종목 및 참가자격 :
  바. 대회개최 효과 :

2. 대회운영 단체
  가. 주최 :
  나. 주관 :
  다. 후원 :

3. 대회요강
  가. 참가대상 :
  나. 예상참가규모 :
  다. 시상계획 :

4. 재원조달 방법 및 예산(안)

수 입		지 출	
항 목	금 액	항 목(예시)	금 액
		임차료	
		인쇄비	
		심판비	
		식비	
		숙박비	
		일반용역비	
		. . . .	
합계		합계	

5. 안전대책
  - 의료지원(구급차 및 인력배치 등), 코로나19 방역지침 등

[별지 제2호서식]

20 년도 전국대회 유치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6">유치신청
대 회
(∨ 요망)</td><td colspan="4">□ 20** SBS배 전국검도왕대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□ 회장기 제**회 전국검도단별선수권대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**회 전국학생검도대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□ 대통령기 제**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□ 제**회 국무총리기 전국생활체육시·도대항검도대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□ 제**회 대한체육회장기전국생활체육시·군·구대항검도대회</td></tr>
<tr><td>유치 단체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주관 단체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체육관 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시설 내용</td><td>본부석</td><td>유 · 무
(m× m)</td><td>조 명</td><td>( )룩스</td></tr>
<tr><td>플로어
재 질</td><td></td><td>관중석</td><td>( ) 석</td></tr>
<tr><td>체육관
크 기</td><td colspan="3">가로(m) × 세로(m)</td></tr>
<tr><td>유치 지원금</td><td colspan="4">원</td></tr>
<tr><td>지원 사항</td><td colspan="4">*경기용품 : (책상, 의자, 득점판, 테이블보 등 경기관련 구비사항 명시 요망)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

상기와 같이 대회 유치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( )검도회장 (직 인)

대한검도회 귀중

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3호서식]

(대 회 명) 결과 보고서

1. 대회명 :
2. 기 간 :
3. 장 소 :
4. 주 최 :
5. 주 관 :
6. 후 원 :
7. 참가규모(세부종목 별) :
8. 정산내역

수 입		지 출	
항 목	금 액	항 목(예시)	금 액
대회비		임차료	
		인쇄비	
		심판비	
		식비	
		숙박비	
		일반용역비	
		. . . .	
합계		**합계**	

9. 시상내역 : (*첨부 : 경기기록지 원본)
10. 평가
11. 개선사항 및 특이사항

20 년 월 일

○ 단체명 : ○ 회장 (직인)

대한검도회 귀중

[별지 제4호서식]

대회 각종 수당 지급표

항 목			금 액	비 고
심판원	심판 수당/1일		100,000원	
	직책수당	임원장, 심판장, 심판배정위원장 등	80,000원	
		심판배정위원 등	60,000원	
		주임심판	40,000원	
영상판독 관련	영상판독위원장 수당/1일		100,000원	
	직책수당	영상판독위원장	60,000원	
	영상판독위원/1일		100,000원	
기타 (공통)	숙박비		*본회 또는 대회유치시도에서 실비결제	
	식비		*본회 또는 대회유치시도에서 실비결제	
	교통비		*심판 수당에 포함*	

※ 주1) 상기 수당지급 대상은 해당 대회 팜플렛에 근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주2) 운영요원에 대한 비용은 대회 주최측에서 별도로 정한다.
주3) 대회장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